

제300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회의록 (부록)

목 차

- 제300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발의의안.....2면
- 제300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검토보고서.....33면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

2026. 7. 20.(월) 10:00

성주군의회 본회의장

제300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 1 차 본 회 의 의 안

〈 의 안 목 록 〉	〈발의 및 제출자〉
1.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구교강의원외6인】
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성 주 군 수】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성 주 군 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김성우의원외6인】
5. 성주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교강의원외6인】
6. 성주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여노연의원외6인】
7. 성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성우의원외6인】
8.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성우의원외6인】



성 주 군 의 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구교강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일자 : 2026. 7.

발 의 자 : 구교강, 장익봉, 김성우,
여노연, 배재억, 이강태,
유정자

1. 주 문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본 의회 의원 중 7명 이내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채택될 때까지로 함.

2. 제안이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군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점을 개선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참 고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 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① 법 제49조에 따른 지방자치 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한다.

제42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지방의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하거나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본회의나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하도록 하거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하게 할 수 있다.

■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감사) ① 의회는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한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 안 번 호	
------------	--

제출년월일 : 2026. 7.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제 출 근 거

○ 지방자치법 제145조 제1항

2) 주 요 내 용

○ 예산규모 : 54,645백만원

. 일반회계 : 51,000백만원

. 특별회계 : 3,645백만원

※ 회계별 세입세출 내역 별첨

3) 첨 부 서 류

○ 2026년도 예산편성기준(기 제출)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참고자료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 안 번 호	
------------	--

제출년월일 : 2026. 7.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제 출 근 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

2) 주 요 내 용

- 기금예산규모 : 4,415백만원
- . 옥외광고발전기금 : 2백만원
- . 재난관리기금 : 1,317백만원
-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 3,048백만원
- .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 48백만원
- ※ 기금별 세입세출 내역 별첨

3) 첨 부 서 류

- 2026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김성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일자 : 2026. 7.

발의자 : 김성우, 장익봉, 구교강,
여노연, 배재억, 이강태,
유정자

1. 주 문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본의회 의원 중 7명 이내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회부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함.

2. 제안이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참고사항**관련근거****■ 지방자치법**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는 특별위원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위원회의 설치) ③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다만, 의원정수가 특히 적어 특별위원회의 설치운영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지 않을 수도 있다.

성주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교강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일자 : 2026.

발의자 : 구교강, 장익봉, 김성우
배재억, 여노연, 이강태
유정자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기준에 부합하도록 의원 겸직신고 및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투명성 제고와 부패 예방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겸직신고 내역 확인 및 검증 절차 신설(안 제5조의2)

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점검 강화(안 제6조)

다. 공공단체 및 관리인 범위 명확화(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성주군의회의원 (이하 “의원” 이라 한다.)”를 “성주군의회의원”으로 한다.

제2조 중 “의원”을 “성주군의회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43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이하 “법” 이라 한다)제4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을 “의원이 법 제43조제3항”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검직신고 내역 확인 및 검증) ① 의장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직신고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확인한다.

1. 지방의원의 선고공보와 대조
2. 당선자 등록 시 이력사항, 군의회 홈페이지 게시자료와 대조
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내역과 대조

② 의장은 확인사항 대조 후 미신고 및 허위·부정확한 내역은 해당의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소명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검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의장은 검직현황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연 1회 이상 검직신고사항을 확인하고, 점검시점은 매년 6월 중으로 실시한다.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의장은 연 1회 제5조의 검직신고 사항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비교하는 등 제1항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7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성주군이 출자·출연(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단체
2. 성주군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3. 성주군으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

③ 제1항의 관리인이란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임직원을 말한다.

제8조제2호 중 “것이 「지방자치법」 제43조제5항”을 “것이 법 제43조제5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u>성주군의회의원</u> (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성주군의회의원</u> ----- ----- ----- -----.
제2조(윤리강령) <u>의원</u> 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은 별표 1과 같다.	제2조(윤리강령) <u>성주군의회의원</u> (이하 “의원”이라 한다.)----- -----.
제5조(겸직신고 및 사임)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성주군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겸직신고 및 사임) ① ----- ----- 「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제43조제1항 ----- ----- ----- ----- ----- -----.
② <u>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u>	② <u>의원이 법 제43조제3항</u> ----- ----- -----.
③ ~ ⑧ (생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신설>	<u>제5조의2(겸직신고 내역 확인 및 검</u>

제6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② (생략)
<신설>

제7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① (생략)

중) ① 의장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겸직신고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확인한다.

1. 지방의원의 선고공보와 대조
2. 당선자 등록 시 이력사항, 군의회 홈페이지 게시자료와 대조
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내역과 대조

② 의장은 확인사항 대조 후 미신고 및 허위·부정확한 내역은 해당의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소명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의장은 겸직현황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연 1회 이상 겸직신고사항을 확인하고, 점검시점은 매년 6월 중으로 실시한다.

제6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의장은 연 1회 제5조의 겸직신고사항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비교하는 등 제1항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① (현행과 같음)

<신 설><신 설>② (생 략)

제8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1. (생 략)

2. 겸직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3조제5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

3. ~ 7. (생 략)

② 제1항의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성주군이 출자·출연(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단체

2. 성주군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3. 성주군으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

③ 제1항의 관리인이란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임직원을 말한다.

④ (현행 제2항과 같음)

제8조(징계 등) -----

-----.

1. (현행과 같음)

2. ----- 것이 법 제43조제5항-----

3. ~ 7. (현행과 같음)

성주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여노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일자 : 2026.

발의자 : 여노연, 장익봉, 구교강
김성우, 배재억, 이강태
유정자

1. 제정이유

성주군의 우수한 자연생태자원과 문화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활용하여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단위 기본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나. 생태관광 기반 조성, 교육·홍보 및 관련 법인·단체 등에 대한 사업 추진 및 지원 근거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다. 생태관광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생태관광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안 제12조)

3. 조례안 : 붙임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의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주군의 자연자산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의 조성 및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태관광"이란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관광을 말한다.
2. "생태관광지역"이란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생태관광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생태관광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시책을 종합적·계획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성주군 생태관광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목표 및 방향

2. 생태관광 기반조성 사업 등에 관한 사항
3. 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생태관광 자원·자산의 보전 및 분야별 생태관광 육성 방안
5. 지역사회 참여형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6.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교육 등 지원 방안
7.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8. 그 밖에 생태관광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이전에 성주군 생태관광 자원 및 실태에 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고 군민 또는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군수는 생태관광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태관광 실태조사 지원 사업
2. 생태관광 기반 조성 등 지원 사업
3. 생태관광 교육 지원 사업
4. 생태관광 홍보 및 행사 지원 사업
5. 생태관광지역협의체의 홍보, 교류, 교육 사업
6. 그 밖에 생태관광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생태관광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성주군 생태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생태관광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생태관광 실태조사 및 그 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태관광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생태관광 업무 담당 부서장
2. 사회단체, 환경단체, 관광 및 생태관광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척·기피·회피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미리 알려주고, 상정안건과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부터 5일 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해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생태관광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성주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주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자원봉사자 모집·활용 등) ① 군수는 생태관광지역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에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성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포상) 군수는 생태관광 활성화 등에 기여한 사람 또는 법인·단체 등에 「성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성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일자 : 2026.

발 의 자 : 김성우, 장익봉, 구교강
배재억, 여노연, 이강태
유정자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에서 권고한 공무국외출장 제도 운영 표준안을 반영하여,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실효성 있는 국외출장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공무국외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의 공정성 제고(안 제4조)
- 나. 공무국외출장 제한 사항 강화(안 제11조)
- 다. 위법 출장 판단시 감사·조사 의뢰 의무화(안 제12조)
- 라. 직원 보호 강화 (안 제16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자료 : 행정안전부 표준안

성주군 규칙 제 호

성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성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심사위원회에 주민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 1개 이상의 대표 또는 임원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 임기만료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제2조 1호 내지 제4호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국외출장을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선진사례 견학 등 일반 목적의 공무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출장 필요성, 긴급성, 출장결과 활용가능성 등을 엄격히 검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④ 의장의 허가 검토서를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개최 이전 해당 의회의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는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3호를 포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및 제1항 제4호의 경우에는 의장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외출장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2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의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출장결과보고서 심사결과 위법·부당한 출장으로 판단 시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외부 및 내부 감사기구 등에 감사 및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첨부)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홈페이지,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재하여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직원 보호 등) ① 의회 소속 직원은 공무국외출장 시 의원의 특정 여행업체 알선, 출장 강요 등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직원에 대해 인사 및 평가 등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② 의원은 공무국외출장 동행 직원에 대하여 비용부담 강요, 사적 심부름, 회식 강요 등 출장 중 공무 외 불필요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제8조 관련)

항목	심사기준	예	아니오
출장의 필요성	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		
	3. 해외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 수행이 가능한지?		
	4. 임기만료 1년 이내인 경우 출장의 긴급성, 출장결과 활용성 등 요건을 충족하는지?		
지방의정과 의 관련성	1. 정책 연구 및 벤치마킹 목적에 부합하는 출장인지?		
	2. 방문지의 기관 면담자가 정해진 출장인지?		
	3. 해당 정책을 지역에 도입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 및 기관을 방문하는지?		
	2. 과거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지?		
	3.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이나 문헌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지 확인했는지?		
	4. 방문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지?		
	5.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지?		
	6. 여러 국가나 도시 방문 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지?		
출장자의 적합성	1. 출장목적 및 계획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지?		
	2. 출장자 중 징계·환수 처분으로 출장제한 사유가 있는지?		
	3.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었는지?		
	4. 출장목적에 맞게 필수 인원으로 한정하고 출장자 간 업무분장이 명확한지?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	1. 출장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했는지?		
	2.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감안, 방문 시기는 적합한지?		
	3. 국내외 등 출장을 자제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출장경비의 적정성	1. 공무국외출장 경비는 예산편성기준 및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되었는지?		
	2.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의 정당성 여부 및 지원금액이 적정한지?		
	3. 사적인 비용 지출 없이 공무국외출장을 수행하도록 계획하였는지?		
안전사고 예방 조치 적정성	1. 방문국 및 주변국의 감염병 발생 여부를 확인했는지?		
	2. 현지활동 중 교통수단을 확보했는지?		

※ '아니오'가 많은 경우 공무국외출장이 부적절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심사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생략)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 · 법조계 · 언론계 · 시민사회단체 등 외부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모 절차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u>이 경우 의장은 심사위원회에 주민을 포함하여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u>	② ----- ----- ----- ----- - <u>이 경우 의장은 심사위원회에 주민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 1개 이상의 대표 또는 임원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구성하여야 한다.</u>
③ ~ ⑩ (생략)	③ ~ ⑩ (현행과 같음)
제11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u>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u>	제11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 ----- ----- ----- <u><후단 삭제></u>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u>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 출장을 계획하는 경우</u>	<u><삭제></u>
4. 5. (생략)	3. 4.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 임기만료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제2조 1호 내지 제4호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국외출장을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선진사례 견학 등 일반 목적의 공무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출장 필요성, 긴급성, 출장결과 활용가능성 등을 엄격히 검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의장의 허가 검토서를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개최 이전 해당 의회의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는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3호를 포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및 제1항 제4호의 경우에는 의장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외출장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2조(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의)

① ~ ④ (생략)

⑤ 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첨부)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홈

제12조(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의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출장결과보고서 심사결과 위법·부당한 출장으로 판단 시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외

페이지,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재하여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사후관리 등) (생략)

<신설>

<신설>

부 및 내부 감사기구 등에 감사 및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4조(사후관리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첨부)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홈페이지,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재하여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직원 보호 등) ① 의회 소속

직원은 공무국외출장 시 의원의 특정 여행업체 알선, 출장 강요 등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직원에 대해 인사 및 평가 등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② 의원은 공무국외출장 동행 직원에 대하여 비용부담 강요, 사적 심부름, 회식 강요 등 출장 중 공무 외 불필요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참고자료

행안부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개정 주요내용

구분	현행	개선
사전절차강화	·심사위 구성시 교육계·법조계 등 외부 추천·공모(주민참여)를 통해 의장 위촉	·(현행) +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시민단체 대표 및 임원 위촉 의무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의장 판단 제한	·외국정부 공식초청, 국제회의 참석, 자매결연 체결 등만 허용 ·일반출장은 긴급성, 출장결과 활용성 등 충족 시에만 의장이 허가
	<신설>	·의장의 허가 검토서 홈페이지 공개 절차 신설
사후관리강화	·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 징계 시 의장 판단 제한	·모든 징계·환수 처분의원에 대해 2년 이내 출장 제한 의무화
	<신설>	·출장 후 심사위에서 위법·부당한 출장 판단시 감사원 등 외부 및 내부 감사기구 등에 감사·조사 의뢰 의무화
직원보호강화	<신설>	·지방의원의 특정 여행업체 알선, 출장 강요 등 위법·부당한 명령 거부 및 직원 인사·평가 등 불이익 처분 금지
	<신설>	·출장 동행 직원에 대한 비용부담 강요, 사적 심부름, 회식 강요 등 출장 중 공무 외 불필요한 지시 금지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성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일자 : 2026.

발의자 : 김성우, 장익봉, 구교강
배재억, 여노연, 이강태
유정자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기준에 부합하도록 의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정비하고 회의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중계 기준(안 제48조의2)

나. 영상회의록 공개기준 및 대상(안 제48조의3)

다. 군정에 관한 질문 방식에 관한 사항(안 제66조의2)

3. 조례안 : 붙임

성주군 규칙 제 호

성주군의회의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성주군의회의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6절에 제48조의2 및 제4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중계)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비공개회의를 제외하고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중계시스템이 설치된 회의 장소에서의 회의)를 의회 누리집 등에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중계방송할 수 있다.
② 중계는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하며, 영상자료를 의장의 허가 없이 인위적으로 편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시간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는다.

제48조의3(영상회의록 공개 기준 및 대상)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가 끝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계영상을 기록·보존하여 의회 누리집 등에 공개한다. 다만,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분과 제48조제1항에 따른 회의록에 게재되지 아니한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공개 영상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중계시스템이 설치된 회의 장소에서의 회의)를 대상으로 한다.

제66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정에 관한 질문은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하되, 이 중 한가지 방식을 선택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48조의2(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중계)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비공개회의를 제외하고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중계시스템이 설치된 회의 장소에서의 회의)를 의회 누리집 등에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중계방송할 수 있다.</u> <u>② 중계는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하며, 영상자료를 의장의 허가 없이 인위적으로 편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시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u>
<u><신 설></u>	<u>제48조의3(영상회의록 공개 기준 및 대상)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가 끝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계영상을 기록·보존하여 의회 누리집 등에 공개한다. 다만,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분과 제48조제1항에 따른 회의록에 게재되지 아니한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u> <u>② 공개 영상은 본회의 및 위원회</u>

제66조의2(군정에 관한 질문) ① <u>본 회의는 제3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을 정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의 본질문과 1문1답 방식의 보충 질문으로 할 수 있다.</u> ② ~ ④ (생략)	<u>의 회의(중계시스템이 설치된 회의 장소에서의 회의)를 대상으로 한다.</u> 제66조의2(군정에 관한 질문) ① <u>군정에 관한 질문은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하되, 이 중 한가지 방식을 선택하여야 한다.</u> ② ~ ④ (현행과 같음)
--	--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

2026. 7. 20.(월) 10:00

성주군의회 본회의장

제300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안 검토보고서

〈 의 안 목 록 〉	〈 제 출 자 〉
○ 성주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교강의원외6인】
○ 성주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여노연의원외6인】
○ 성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성우의원외6인】
○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성우의원외6인】



성 주 군 의 회

성주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기준에 부합하도록 의원 겸직 신고 및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투명성 제고와 부패 예방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겸직신고 내역 확인 및 검증 절차 신설(안 제5조의2)
- 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점검 강화(안 제6조)
- 다. 공공단체 및 관리인 범위 명확화(안 제7조)

3.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청렴도 평가 기준에 부합하도록 의원의 겸직신고와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에 대한 점검 절차를 강화하고, 관련 용어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의정활동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부합하며, 의원 윤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성주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성주군의 우수한 자연생태자원과 문화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활용하여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단위 기본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나. 생태관광 기반 조성, 교육·홍보 및 관련 법인·단체 등에 대한 사업 추진 및 지원 근거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다. 생태관광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생태관광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안 제12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성주군의 우수한 자연생태자원과 역사·문화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이를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부합하며, 성주군의 지역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성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 이유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에서 권고한 공무국외출장 제도 운영 표준안을 반영하여,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실효성 있는 국외출장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공무국외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의 공정성 제고(안 제4조)
- 나. 공무국외출장 제한 사항 강화(안 제11조)
- 다. 위법 출장 판단시 감사·조사 의뢰 의무화(안 제12조)
- 라. 직원 보호 강화 (안 제16조)

3. 검토의견

- 본 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하고, 출장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공무국외출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관행을 예방하고 직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부합하며 공무국외출장 제도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 이유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기준에 부합하도록 의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정비하고 회의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중계 기준(안 제48조의2)
- 나. 영상회의록 공개기준 및 대상(안 제48조의3)
- 다. 군정에 관한 질문 방식에 관한 사항(안 제66조의2)

3. 검토의견

- 본 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기준에 부합하도록 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여 회의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부합하며,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본 규칙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